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71호(號) 1934(昭和 9)년 8월 4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05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9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8월 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72조(條)제1항(項)제3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3 동일협궤선(同一挾軌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경우

가 표기하중(標記荷重) 5톤(噸)의 화차(貨車)를 사용(使用)한 때는 5톤(噸). 단(但) 화약류(火藥類)에 있어서는 갑종(甲種)은 2톤(噸), 을종(乙種)은 1톤(噸)으로 함.

나 표기하중(標記荷重) 15톤(噸)의 화차(貨車)를 사용(使用)한 때는 하기(下記) 같이 함.

등급표(等級表) 상(上) 표준화차(標準貨車)에 대(對)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	표기하중(標記荷重) 15톤(噸)의 화차(貨車)에 대(對)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
5톤(噸)의 것	5 톤(噸)
6톤(噸)의 것	6 톤(噸)
11톤(噸), 13톤(噸), 14톤(噸), 15톤(噸)의 것	11톤(噸)
16톤(噸), 18톤(噸), 20톤(噸), 22(噸)톤의 것	13톤(噸)
23톤(噸) 이상의 것	15톤(噸)